

# 이 사 회 의 사 록

회 의 일 시 : 2020년 8월 28일 14시

회 의 장 소 : 법인 2층 회의실

이 사 정 수 : 8명

재 적 이 사 : 8명

출 석 이 사 : 6명(최봉원, 최훈, 이명자, 서인교, 정규식, 서영옥)

출 석 감 사 : 1명(노미진)

대표이사 최봉원은 위와 같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전차 회의록 낭독에 이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 제1호 의안 산하시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의 건

산하시설의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을 검토한 바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다.

[2020년 추경예산]

(단위:원)

| 시설명      | 세입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세출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| 당초예산        | 추경예산        | 증감          | 당초예산        | 추경예산        | 증감          |
| 영보직업재활센터 | 686,086,000 | 816,403,633 | 130,317,633 | 686,086,000 | 816,403,633 | 130,317,633 |

##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

목적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 필요하여 논의한 바,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제4조(사업의 종류)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
4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노숙인재활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의 사회복지관의 설치.운영 및 지원
6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.운영 및 지원
7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.운영 및 지원
8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의 장기요양기관의 설치.운영 및 지원
9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.운영 및 지원
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이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(회의 종료 시간 : 14시5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아래에 날인하다.

2020년 8월 28일

사회복지법인 전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



|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대표이사 | 최 봉 안 | 이 사 | 최 훈   | 이 사 | 이 명 자 |
| 이 사  | 서 인 교 | 이 사 | 정 규 석 | 이 사 | 서 영 음 |
| 감 사  | 노 미 진 |     |       |     |       |

